

2014. 0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3카합5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이문원

안동시 송현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현서

피 신 청 인

1. 최경용
2. 한양섭
3. 정준현
4. 김정희
5. 김현진
6. 배병환

7. 김정길

8. 김옥희

9. 김종민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최경용, 정준현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 한양섭, 김정희, 김현진, 배병환, 김정길, 김옥희, 김종민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학교법인 경안학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가합105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들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귀 원에서 정한 자를 피신청인들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1. 이사 : 12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및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하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향존직분자이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경안학원은 2012. 10. 19.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의 수와 종류를 조정하고(제18조), 개방이사의 비율을 변경하고 개방이사 자격에서 '향존직분자'를 삭제하였다(제18조의2).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정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인(이사장 1인 및 1/4의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및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임원정수의 1/4명으로 하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한다.

제28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에 대한 이 사건 각 판결

1) 피신청인 배병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로 재직중이던 2007. 7. 25. 경안학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였다. 경안노회는 2008. 4. 11. 정기노회를 개최하여,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의 이사 및 감사는 다른 산하기관의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 경안노회규칙 제26조에 위반하여 여러 산하기관의 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는 자는 즉시 한 곳을 사임하라'는 결의를 하였다. 당시 피신청인 배병환은 경안학원의 개방이사,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의 감사로 재직중이었는데 위 결의 이후에도 위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경안노회 재판국은 2010. 3. 23. 피신청인 배병환이 경안노회규칙 및 정기노회결의에 위반하여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에서 중복하여 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다는 점 및 피신청인 배병환이 김태진이 경안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카합149호가처분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고 경안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안노회 규칙 제23조 제1항을 부정하여 총회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신청인 배병환을 장로면직 및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제166-2호). 피신청인 배병환이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0. 6. 14. 피신청인 배병환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제94-10호).

2) 피신청인 김종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로 재직중이던 2009. 5. 20. 경안학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였다. 경안노회는 경안학원과 사이에 경안학원의 운영방식을 둘

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2009. 10. 8.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경안학원의 임원 인준을 경안학원 전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산하기관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경안노회의 인준을 받고, 인준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안노회 규칙을 신설하였다(제24조 내지 제24조의4). 그 후 위 전권위원회는 2009. 10. 22. 이교섭에 대한 경안학원의 이사 인준 청원을 불허하였는데, 피신청인 김종민은 이 교섭을 경안학원 이사에서 교체하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경안노회의 이사인준을 받지 않거나 경안학원 전권위원회에서 선임통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경안노회 재판국은 2010. 5. 24. 피신청인 김종민이 경안노회 규칙 제24조의2에서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김종민을 장로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166-3, 5호). 피신청인 김종민이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0. 9. 1. 피신청인 김종민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에 대한 위 각 판결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라. 경안학원의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1) 신청인,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 그리고 변봉갑, 양용철, 박원택, 김태진은 2010. 7. 13. 경안학원의 309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신청인 최경용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2) 신청인,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 최경용 그리고 변봉갑, 이교섭, 김태진은 2010. 8. 3. 경안학원의 310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신청인 한양섭, 정준현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3) 신청인, 피신청인 김종민, 최경용, 정준현 그리고 변봉갑, 이교섭, 김태진은



2011. 1. 12. 경안학원의 315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신청인 김정희, 김현진을 개방이사로, 피신청인 배병환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4) 신청인, 피신청인 김종민, 한양섭, 정준현, 김현진, 김정희 그리고 변봉갑, 김태진은 2011. 7. 19. 경안학원의 318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신청인 김옥희를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5) 신청인, 피신청인 김종민, 최경용, 정준현, 김현진, 김옥희 그리고 변봉갑, 이교섭, 김태진은 2011. 9. 23. 경안학원의 319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신청인 김현진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6) 신청인, 피신청인 김종민, 최경용, 정준현, 한양섭, 김정희, 김현진, 김옥희 그리고 김태진, 변봉갑은 2012. 1. 19. 경안학원의 320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신청인 김정길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7) 신청인, 피신청인 김종민, 한양섭, 김정희, 김옥희, 김정길 그리고 김태진, 변봉갑은 2012. 4. 18. 경안학원의 321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신청인 김옥희, 김정길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8) 신청인, 피신청인 김종민, 김옥희, 김정희, 김현진, 한양섭, 최경용, 김정길, 피신청인 정준현으로부터 위임받은 김태진 그리고 변봉갑, 김태진은 2012. 10. 19. 경안학원의 324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신청인 김종민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9) 신청인, 피신청인 김종민, 김옥희, 김정길, 한양섭, 김현진, 김정희 그리고 김태진, 변봉갑은 2013. 4. 4. 경안학원의 327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변봉갑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경안학원의 1) 내지 9)항 기재 각 이사회결



의를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한다).

2. 피신청인 최경용, 정준현, 배병환, 김정길(이하 이 항에서는 '피신청인 최경용 등'이라 한다)의 본안전 항변

가. 피신청인 최경용 등은 자신들은 이 사건 신청 전에 경안학원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 경안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므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피신청인 최경용 등을 상대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말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소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 최경용, 정준현은 이 사건 신청 전에 이미 경안학원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여(경안학원의 등기부에도 이사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경안학원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피신청인 최경용, 정준현에 대한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신청인 최경용, 정준현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 배병환, 김정길이 경안학원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사임 이후에도 경안학원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은 기록상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배병환, 김정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신청인 최경용, 정준현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이하 3, 4항에서는 위 나머지 피신청인들만을 통틀어 '피신청인들'이라 칭한다)의 본안전 항변

가. 항변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후인 2013. 6. 18. 임기만료로 경안학원의 이사 지위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피신청인들이 경안학원의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말 것을 구할 가치분을 구할 적격 또한 없

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학교법인의 이사가 임기만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퇴임이사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안학원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경안학원의 이사는 이 사건 결정일에 가까운 2013년 11월 무렵 피신청인 김종민, 한양섭, 김정희, 김현진, 임옥희, 김정길 및 김태진, 변봉갑(신청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변봉갑에 대해서도 이 법원 2013카합102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이 있을 뿐인 사실이 각 소명되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라면 위 이사들 중 김태진만이 남게 되어 경안학원은 정상적인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위 법리에 따르면 퇴임이사인 신청인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신청인



경안학원 정관 제18조의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2조에 의하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인 경안학원의 개방이사로 선임되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 집사, 또는 권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항존직분자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은 이 사건 각 판결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에서 면직되고 출교조치를 받은 사람들이므로 항존직존자라고 볼 수 없어, 최소한 이 사건 각 판결확정일 이후부터는 경안학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 배병환은 면직 및 출교판결이 확정된 2010. 6. 14. 이후에 열린 1. 라. 1), 2)항 기재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신청인 최경용, 한양섭, 정준현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각 결의는 개방이사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한 결의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 배병환을 제외하면 개최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그 후 개최된 1. 라. 3) 내지 9)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도 2010. 9. 1. 면직 및 출교판결이 확정되어 경안학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피신청인 김종민 및 각 무효인 1. 라. 1), 2)항 기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이 참석한 결의로서 자격 없는 이사 또는 개방이사를 제외하면 모두 개최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경안학원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안학원에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경안학원 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다.

2) 피신청인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은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 이사로써 참석, 결의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유효하고, 피신청인들은 경안학원의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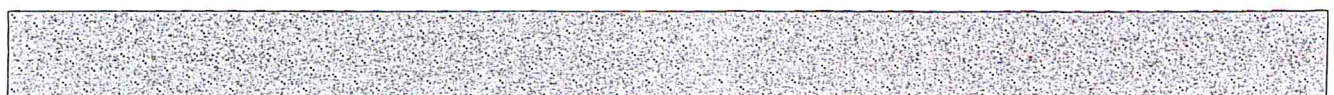


이 사건 각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제한 판결로서 모두 무효이다. 또한 피신청인 배병환은 판결 당시 감리회 소속 지구총비전교회 협동장로였고, 2010. 12. 16.부터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경안비전교회 시무장로였으며, 피신청인 김종민은 판결 당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체 순복음샘솟는교회의 협동장로였고, 2010. 12. 16.부터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 경안비전교회 시무장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항존직분자였다.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한 신청인이 이 사건 각 이사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경안학원이 2012. 10. 19. 전에 개방이사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1조의 규정 취지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에 대한 이 사건 각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인바, 만약 이 사건 각 판결이 정당하다면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은 경안학원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각 판결 확정 이후 참석하여 의결에 참가한 각 해당 이사회 결의는 정족수에 미달하여 그 효력이 없고,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의 찬성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서 순차로 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가하여 한 나머지 이사회 결의도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을 경안학원의 이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판결이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유효하므로, 피신청인들은 경안학원의 이사 지위에 있게 된다.

2) 이 사건 각 판결의 징계사유는 경안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임을 전제로, 피신청인 배병환이 경안노회 규칙에 위반하여 여러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지위를 겸직하고 경안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임을 부정하였다는 것, 피신청인 김종민이 경안



노회 규칙에서 정한 산하기관에 대한 경안노회의 이사, 감사 인준권한을 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장로회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7조 제1항이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안학원이 위 규정에 따라 경안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되어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안노회는 1953. 11. 24. 제54회 총회를 열어 안동에 기독교 고등학교 설립 청원을 허락하기로 가결하였다. 경안학원은 1954. 2. 20. 설립되었는데, 경안학원 설립 무렵 이사장 반피득을 비롯한 미국인 3명과 한국인 이사 3명, 감사 2명이 작성한 "재단법인 경안고등학교기부행위" 문서에는 경안학원의 명칭이 경안노회교육재단이 아닌 "재단법인 경안고등학교"(제3조)으로 되어 있고, "기본재산은 이사회 결의를 경(經)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수(受)하지 아니하면 매매, 기부, 양여 또는 담보 등을 할 수 없음"(제6조),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문교부 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제12조), "이사호선으로 이사장 1인을 선정하여 문교부 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제13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 정원 3분의 2 이상 동일(同一)로서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수(受)치 않으면 변경할 수 없음"(부칙 제25조)이라고 되어 있었고, 달리 경안노회와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나) 1966년 경안학원의 정관에는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경안노회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이사와 감사는 경안노회의 승인을 얻



은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4조), "이 정관은 경안노회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라는 규정이 있었다.

다) 1963. 6. 26. 사립학교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경안학원은 임원 선임방법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정관을 개정하였고,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 당시 정관에는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제1항),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 제2항),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0조 제1항)라고 되어 있고 경안노회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어 있었다.

라) 한편, 경안학원은 경안노회 승인 없이 이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에도 관례적으로 선임 이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안노회에 이사·감사 인준 요청서를 제출하여 경안노회로부터 인준을 받았고 경안노회가 반려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다시 인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경안노회로부터 학원 보조금 등으로 2005년 1,760만원, 2006년 3,080만원, 2007년 1,900만원, 2008년 2,470만원, 2009년 2,770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경안노회가 직접 경안학원을 상대로 재정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안학원은 반피득 선교사가 경안노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판결 당시 시행되고 있던 경안학원의 정관에 의할 때 경안학원이 경안노회로부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 등에 관하여 어떠한 관리나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경안학원 정관의 변경을 연혁적으로 살펴 볼 때 경안노회로부터 임원 선임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기타 재산관리, 정관변경, 해산 등에 있어서 경안노회의 찬성 또는 승인을 요하는 규정도 삭제된바, 그렇다면 경안노회 규칙에서 경안학원을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으로 하고, 경안학원의 임원은 경안노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안학원이 자체적으로 경안노회의 위와 같은 규칙이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이상 경안학원으로 하여금 위 규칙에 따르도록 강제할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안학원이 경안노회로부터 학원보조금을 지급받고 관례적으로 이사 선출에 관하여 경안노회의 인준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는 경안학원이 자체적으로 경안노회의 의견을 듣고 행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두고 경안학원과 경안노회의 관계가 산하기관과 감독기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5) 이와 같이 경안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의 행위가 경안노회 규칙 제2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각 판결은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경안노회 재판국에서 분쟁의 상대방인 경안학원의 이사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에 대하여 장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한 것인 점, 사립학교법의 취지 및 이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이 경안노회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



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판결은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에게 장로직을 면직하거나 출교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경안노회의 뜻에 따르지 않는 피신청인 배병환, 김종민을 경안학원의 개방이사 지위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한 판결로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이 사건 각 판결은 무효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최경용, 정준현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7.

재판장 판사 이상균



판사 강동원



판사 김수정



정본입니다.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 김 원 대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